

## 고령군 - 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

- 코로나19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제한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농가 일손부족의 심각서 대두
- 외국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가능성 확대

### □ MOU 추진 계획

- 체결일자 : 2021. 12월 예정
- 대 상 국 : 베트남
- 방 법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협약  
(협약서 사인 후 지자체와 전자문서로 교환)
- 협약내용
  - 농업기술의 공유와 농업인적 교류를 통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
  - 인적교류는 대한민국 MOU협약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
  -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교류



## 대한민국 고령군과 베트남과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과 베트남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양 지역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양 지역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전제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 양 지역은 농업기술 보급 및 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한다.
  - 1) 고령군은 농업기술 전수를 위해 베트남 농업인에게 농업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
  - 2) 베트남은 원활한 농업연수를 위해 참가 농업인의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사전 실시하여야 한다.
3. 양 지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4. 고령군과 베트남은 농업분야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본 협정서는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각 1부씩 작성하였으며,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양 지역에서 각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고    령    군  
군 수    광    용    환

베    트    남

서명

서명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과 베트남 간  
외국인 계절근로 파견 협약서(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과 베트남 하이즈영성 짜린시(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고 베트남 근로자를 한국에 일하도록 함에 있어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는데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서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 (아래에서는 “고령군” 이라 칭함)

대표자 : 곽용환                      직 위 : 군수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대표 전화번호 : 054-954-2201

2. 베트남

대표자 :    직 위 :  
주 소 :  
대표 전화번호 :

제 2 조 협약서 체결 및 이행 원칙.

1. 본 협약서 체결과 이행은 한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는 한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아래에서는 “사업”이라 칭함)에 따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1.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인정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상주하거나 거주한자, 한국 및 베트남 법규에 따라 품행이 좋고,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으며, 베트남에서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야 한다.

2. 사업을 맡은 한국 고령군, 베트남, 고용주와 근로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 이행에 참여한다.

#### 제 4 조 근로자 파견 및 도입조건.

##### 1. 선발 대상 및 기준

- 가. 선호하는 연령대 30세에서 50세 사이의 협약 제3조 정의된 베트남에 거주하는 남, 여 근로자.
- 나. 정책적 우선 선발 대상 : 농지소유 가정, 농업에 종사 가정
- 다. 교육, 직업 전문 수준 : 중학교 또는 그 이상을 졸업하여야 하며 농업분야에 지식을 갖춘 근로자.
- 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자.
- 마. 친척(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 2. 선발요구.

- 가. 선발 근로자 수 (양측이 서면으로 통보)
- 나. 선발시 고령군 관계자가 직접 면접을 보고 현지조사 후 선발함.

#### 제 5 조 근로조건.

##### 1. 기간.

- 가. 2회/년 (상반기 3월~7월, 하반기 7월~11월)
- 나. 계절근로자 (E-8 단수비자, 최대 150일 체류가능)
- 다. 계절근로자 (C-4 단수비자, 최대 90일 체류가능)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성실근무자로 재추천 받으면 (동일

한 고용주 근무조건) 출국한 후, 당해 년도 재입국 가능.

## 2. 업종.

가. 농업노동. (시설원예, 과수, 버섯, 마늘, 양파 등 농작물 수확, 재배 및 관리 등)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업 생산·가공 단체 및 개인의 농장 및 시설.

## 3. 근로시간 및 휴식.

가. 근무 시간 : 8시간/1일(휴게시간 제외), 6일/1주, 단,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1일 최대 1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나. 휴식 시간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다. 매월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을 비가 오는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4. 급여조건

가. 월 1회 이상 원화로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나.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산정되며,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상 지급한다.

다. 한국 2022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160원, 월급으로 1,914,44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금액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다.

라. 고용인과 고용주가 시간 외 근무에 합의하는 경우, 고용주의 지급금액은 기본급의 150%이상이어야 한다.

마. 날씨 및 기타이유로 작업할 수 없는 여건이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 5. 안전, 노동 보호, 숙식 및 생활 조건.

가. 고용주는 일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안전 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숙박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는 숙소로 제외)을 제공하고,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한다.(월급의 20%이내 공제가능)

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쾌적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숙식을 전문 관리자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 제공할 수 있다.

#### 6. 항공료, 사증발급 외 행정비용.

가. 왕복 항공료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나.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행정비용(비자신청, 범죄경력증명, 여권, 건강검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 7. 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가. 한국에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의 리스크 보험은 근로자가 출국 전 국제여행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보험료는 현행 규정에 따름)

나. 근로자 입국 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관련 각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 8. 근무기간 전 계약해지.

가. 입국 후, 건강검진서류에 나와 있는 질병 이외에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또는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할 경우 농장주의 신고를 받아 고령군은 확인 후 근로자를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진 출국의 의무를 가진다.

9. 예상문제 (있는 경우)

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의 사유 발생 시 고령군은 고용주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10. 입국 및 출국.

가. 고령군과 베트남은 계절근로 파견 과정 중에 근로자가 입국하고 출국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할 책임이 있다.

나. 계절근로자 한국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입·출국시 문제가 발생하면 고령군과 베트남은 협조하여 근로자 입·출국 절차를 행한다.

제 6 조 협약서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본 협약서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 베트남의 법령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계약서가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보장한다.

다.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각 측이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라. 이행과정 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조하고 최선을 다한다.

마.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가 근로 이외의 일에 이용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한다.

2. 고령군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한다.

- 가. 입국 후 근로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 나. 고령군의 농업, 문화 관련 기본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 다. 근로조건 이행 및 불법체류 방지에 관한 관련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라. 근로자 상담을 위한 통역을 무상 지원한다.
- 마. 입국 전 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한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공하며 충분하고 상세하게 안내한다.
- 바. 한국에서 근로자가 베트남 행정기관 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사. 본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 고령군이 요청한 인력을 고령군이 직접 면접 및 현지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한다.
- 나. 선발된 우수인력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다. 선발된 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조치를 취하며, 근로자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 라. 출국 전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파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관리한다.
- 마. 불법체류 방지 교육 및 출국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 바. 근로자가 출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 본 협약의 내용에 따른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 이행할 운영위원회를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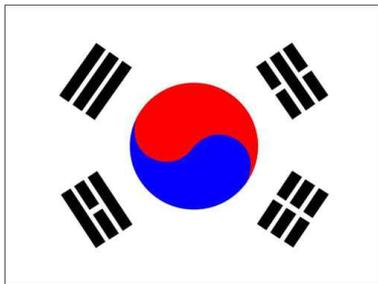
제 7 조 이행조항.

- 1. 본 협약은 두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상호간 이의가 없을 시 지속한다.
- 2. 이행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하면 양측이 협조하여 한국과 베트남 법률의 규정과 실제에 맞게 협의사항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은 양 국가 한국의 고령군과 베트남의 사업 관계자 대표 및 관계자들이 상호 방문 협의에 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전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 양 국가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없는 관계로 협약서를 작성 후 양 국가의 영사관에서 인정하는 공증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는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3종류로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해석이 다르게 판단 될 경우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추후, 코로나19가 안정 및 종식이 되어 양 국가의 방문이 가능할 경우 고령군과 찌린시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상호 방문 사회, 경제,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지원, 조정, 교류를 진행 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군 수

서 명 : 곽용환



베트남

서 명 :

2021년       월       일